



시민 여러분의 값진 납부금,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환부불요

담당자 | 02-2127-4874,4482
문의처

우체국

e-그린우편



서울시 관련 문의

A1 143 06 72

동서울 서울광진 1062728760038 중앙



보통등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용답동)

서울특별시성동도로사업소 귀하

04807

◇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20%가 경감되며 납부기한이 초과되면 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다음 달부터 매월 1.2%의 증가산금 (60개월 총 72%) 등 75%까지 가산됩니다.

서울특별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동대문구 영수증 경영수증

납부자	서울특별시성동도로사	
전자납부번호	11230-2-40-19-200875647	
기관번호	세목	
2300002	62288139	
납부년월기	부과번호	
2019103	0020164	
납기내	2019.10.30 까지	
금액	40,000	
합계금액	40,000	
납기후 수납불가 <small>까지 원</small>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납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차량번호	72우1596
위반일시	2019.10.04 10:07
위반내용	주정차금지(황색실선)구역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2019.10.30 까지 입니다. 기한 내에만 감경된 과태료가 적용되며 기한이 경과되면 원래 과태료가 부과된 기한 마지막 날인 오후 10시 30분까지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함 의견제출을 하여도 자진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단속구분	고정형CCTV(시청)
과 태 료	40,000 (감경20%적용. 원과태료 : 50,000))
<관련법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자진납부 기한이후 원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도로교통법 제60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위반장소 답십리5동 우리은행앞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조회 인터넷 : <http://cartax.seoul.go.kr>

서울특별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은행 동대문구 수납의뢰서 확인용

납부자	서울특별시성동도로사업소	
전자납부번호	11230-2-40-19-200875647	
기관번호	세목	
2300002	62288139	
납부년월기	부과번호	
2019103	0020164	
납기내	2019.10.30 까지	
금액	40,000	
합계금액	40,000	
납기후 수납불가 <small>까지 원</small>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납인

납부방법 안내 23시 30분까지 납부 가능 (은행별 납부마감시간 다를 수 있음)

전자납부번호	11230-2-40-19-200875647
온라인 납부	스마트폰 (STAX) : 앱 ·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 핀번호 또는 지문로그인, 타인납부 가능(전자납부번호 입력) 이택스 (ETAX) :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택스> 검색 · 회원 : 로그인 조회,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 · 납세번호 입력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인터넷 : 각 <은행> 홈페이지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ARS :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안내에 따라 납부
편의점 납부	편의점수납 바코드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조회 인터넷 : http://cartax.seoul.go.kr	

은행 CD/ATM기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납부기한 이후 수납불가

은행 전용계좌 납부

신한	562-085945-45-724
우리	615-690844-18-503
KEB하나	150-923066-42-937
국민	445-392048-86-075
기업	602-340052-97-182
우체국	912-164808-52-289
citi 씨티	4509068992767
농협	790-086921-20-257
수협	086-400305-32-702
카카오뱅크	9103325918894
케이뱅크	700-034392-32-331

위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은행 등 납부 가능 (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